# 스페인 - 디지털 서비스세 과세표준 등 관보 게재

■ **스페인 국세청은 2021년 6월 29일, 디지털 서비스세(DST)에 대한 과세대상, 과세표준 및 면제대상 등을 관보에 게재함[1), 2)]**

■ **디지털 서비스세(DST) 과세표준은 온라인 광고, 온라인 중개 및 데이터 전송 등 명확하게 디지털 서비스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를 말하며 각각의 거래별로 결정됨**

○ 과세표준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음

- 납세자가 신고 당시 과세표준을 알고 있었지만 잘못 결정된 경우, 과세표준의 수정은 환급신청 또는 자진신고 납세제도의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등 일반적인 세무조정 절차를 따름
- 환급신고 당시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을 추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세 규정이 최종적으로 확립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 세무조정 절차를 따름
- 세금 조정은 4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,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자는 발생할 있음

■ **반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광고는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표적 광고로 간주됨**

○ 납세자는 광고를 삽입하는 사람 또는 인터페이스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광고 장소를 관리하기로 계약한 제3자가 될 수 있음

■ **일반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의 면제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만 적용됨**

1) IBFD, "Tax Administration Clarifies Determination of Taxable Base for Digital Services Tax," 2021. 7. 2., https://research.ibfd.org/#/doc?url=/data/tns/docs/html/tns_2021-07-02_es_1.html, 검색일자: 2021. 7. 20.
2) 스페인 관보, "Imposta di consumo sulle bevande edulcorate," 2021. 6. 29., https://www.boe.es/boe/dias/2021/06/29/pdfs/BOE-A-2021-10745.pdf, 검색일자: 2021. 7. 20.

○ 온라인 중개 서비스란, 상호작용 서비스(interaction services)가 있거나 없는 중개를 모두 포함하며,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된 적어도 두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함

– 거래가 수행되는 동안 해당 장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음

○ 공급자의 웹 페이지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공급자가 중개자 역할을 하지 않는 온라인 광고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

■ **단, 특수 관계자 간 디지털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100%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같은 모회사에 의해 참여한 그룹 내 거래에 대해서는 디지털 서비스세의 면제가 적용됨**

■ **디지털 서비스세의 납세의무는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발생하며, 거래는 인보이스가 발생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**

<자료수집 및 조사: 김다랑 관세사>